

# 공공발주기관 ‘제도화된 갑질’ 이번만큼은 ‘굳은살’ 도려낼까

정부가 다음달 공공분야 ‘갑(甲)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사정 당국의 개선 권고조차 번번이 무시해온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는 공공 발주 기관 갑질의 정점에 있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선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 관행 뒤에 숨어 건설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화된 갑질’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7월 중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반부패정책 협의회의 “갑질 문화는 국민의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라고 지적하며 공공분야의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건설분야를 포함한 공공분야 전반의 갑질 근절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갑질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법·제도 뒤에 숨은 불공정 만연 정부, 내달 중 근절 종합대책 발표 감사원까지 개선권고, 업계 ‘주목’ 미온적 태도 기재부, 변화가 관건



**제도화된 갑질 사례**  
예산 맞춰 공사비 후려치고 용지보상·민원처리 떠넘기고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멋대로

관한 행사, 재량 처벌에 관한 법령 지침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청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부패 예방감시단에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사례 및 개선방안’을 제출했다.

실제 건설분야에서는 입찰 전 단계부터 계약과 완공 후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갑질이 관행화돼 있다.

공공 발주기관들은 예산에 맞춰 터무니 없는 가격에 공사를 발주하거나 입찰정보를 누락 공개하고, 임의적으로 입찰을 취소하기도 한다. 용지 보상, 민원 처리 등 발주처 몫인 업무까지 시공사에 떠넘기고,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술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발주처도 즐비하다. 철도 공기업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한편,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자의적으로 늘려 운용한 사례도 있다.

김태형기자 kth@ > 2면에 계속

알립니다

## 같이 가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건설경제〉가 2018년 건설협력증진대상을 공모합니다

〈건설경제〉가 ‘2018년 건설협력증진대상’을 공모합니다. 지난 2005년 처음 제정돼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상은 건설산업 주체들의 동반성장 역량과 의지를 평가,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행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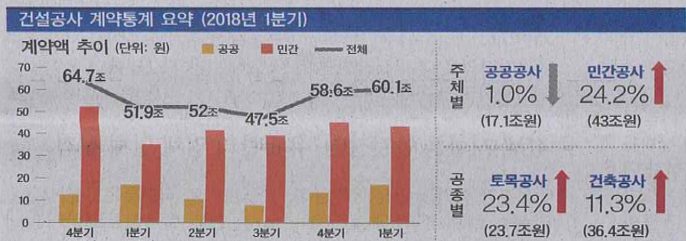
건설협력증진대상은 서류 심사과 공개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거치는 동시에 우수한 동반성장 정책 사례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상 기업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제도’에서 ‘2점’(상향 예정)의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상호협력평가 우수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최대 3점 및 시공능력평가액의 6%를 가산점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장관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벌점 ‘2점’의 감경 조치도 더해집니다.

협력 부문 수상 기업(전문건설사)은 종합건설사 외주담당자 모인인 건설외주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 기회와 함께 신용정보회사인 이크레디블로부터 무상 재무컨설팅을 제공받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길라잡이가 될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명 : 2018 건설협력증진대상
- 주최 : 건설경제신문, 건설외주협의회
- 후원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크레디블(ecredible)
- 응모대상 :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공기업 및 종합, 전문, 설비, 전기, 정보통신업체, 건설산업 분야 협회·단체
- 응모방식 : 자체 지원 또는 협력 상대(일반·전문건설업체) 간 추천 중 택일
- 시상부문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중소기업부장관 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표창, 동반성장위원장 표창,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 응모신청 및 심사
  - 1차 신청서 접수 : 2018년 6월 25일~7월 20일(오후 6시 마감)
  - 2차 심사서류 접수 : 2018년 7월 23일~8월 24일(오후 6시 마감)
  - 3차 발표행사 : 2018년 9~10월 중(공개 프레젠테이션 심사)
  - 시상식 : 2018년 11월
- 공모 안내서와 응모 신청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건설경제〉 홈페이지 ([www.cnews.co.kr](http://www.cnews.co.kr)) 배너 참고
- 문의 : (02)3485-8448



## 건설공사 계약액, 5분기만에 60兆대 회복

(1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

지나해 동기 대비 15.8% 늘어  
공공 감소 속 민간 24% 급증

건설공사 계약액이 5분기 만에 60조원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계약한 1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에 대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한 금액을 집계한 것이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 2016년 4분기 64조7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작년 1분기(51조9000억원)와 2분기(52조원) 50조원대 초반으로 줄어들고 3분기(47조5000억원) 들어 40조원 가까이 축소됐다.

그러다가 4분기 들어 58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올 1분기 60조원으로 올라섰다.

건설공사 계약액이 60조원을 웃돈 것은 5분기 만이다.

주체별로는 공공이 1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반면 민간

은 43조원으로 24.2% 증가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과 건축이 각각 23조7000억원, 36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3.4%, 11.3% 늘어났다.

토목은 5조3000억원 규모의 대형 민간발 전소 2건 계약액이 반영됐고, 건축은 기존 공장 등의 증액 계약으로 증가 폭이 일시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2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5% 늘어났고, 51~100위 기업은 2조9000억원으로 16.6% 줄었다.

101~300위 기업은 4조9000억원으로 1.9% 감소했고, 301~1000위 기업과 그 외 기업은 각각 5조2000억원, 18조4000억원으로 0.2%, 8.2% 증가했다. 현장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24조7000억원, 비수도권이 18.8% 늘어난 3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본사 소재지의 경우 수도권이 전년 동기보다 16.3% 늘어난 35조9000억원, 비수도권이 15.0% 증가한 25조1000억원이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민기자

입찰관련 서류, 공고시점 아닌 현장설명 때 교부

# 정보제공 늦어져 준비시간 부족

입찰참가자 등록 후 입찰 응하지 않으면 신인도 감점

## 최종 참여여부 선택할 권리 제한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 예방감사단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공 발주기관의 갑(甲)질이 건설공사 전 단계에 걸쳐 확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방부, 경찰청 등은 실행원가보다 턱없이 낮은 예정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A기관은 B경찰서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31% 낮게 입찰공고를 냈고, C기관은 D학교 강당 증축공사에서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무차별적으로 깎아 정상 예정가보다 22% 낮게 발주했다. 건설회사들이 추후 예정가격이 부당 삭감된 사실을 알았어도 이의신청제도가 없다 보니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간헐 관계자는 “예정가격이 부족하게 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고스란히 적자를 감수하고 수행하거나, 일정기간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받고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등은 설계서, 물량내역서, 단가산출 세부 설명서와 같은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공고 때가 아닌 현장설명 때 열람·교부하고 있다. 입찰 참가의 의사가 없는 회사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이다.

하지만 실제로 전산처리 용량 문제 등 발주기관의 행정편의 때문인 경우가 많다. 건설사들로서는 입찰정보 제공이 늦어질수록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했는지 확인하거나 제대로 입찰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철도시설공단은 입찰참가자 등록 후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1회당 1점씩 신인

### 뉴스포커스

#### 공공 발주기관 갑질 천태만상

낙찰자 통보 이전 입찰 취소해도 이의제기 못하도록 규정 두거나 비용에 계상되지 않은 과도한 기술인력 배치기준 운용하기도

도 감점을 준다. 이는 입찰참가 등록 후라도 낙찰 가능성, 공사 수행여건, 수익성, 상황변화 등에 따라 최종 참여 여부를 선택하는 건설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간헐은 입찰참가 등록만으로 입찰 참가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입찰을 취소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입찰을 취소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로 인해 입찰자들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철도시설공단 등은 용지보상, 민원처리 등 발주자의 업무를 건설회사에 떠넘겨왔다. 용지 보상 등이 장기화되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공사용지를 임대해 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면서, 공기 지연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해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사용지 미확보에 따른 공기지연은 다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발주기관 대부분은 추가예산 확보가 곤란하고 예산 증액 시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비용에 계상되지 않은 과도한 기술인력 배치기준을 운용하는 사례도 있다. 중부발전은 관련법령에는 기술지원업무 수행자에 대한 배치기준이 없지만 △발전소 건설시공,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 1인 등을 시공기술지원자로 두는 특수조건을 운용 중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때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간헐은 “실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입찰자가 제출한 공사비 내역인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부당하게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스공사는 LNG 저장탱크에 대해 ‘전체공사 준공 후’부터 하자담보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공사계약이 부분 완료돼 관리·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로 규정한 것과 다르다. 상위 규정을 위반해 하자보증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김태형기자 kth@

## 社 說

# 발주기관 갑질 척결, 文 정부의 약속이다

공공 발주기관의 '갑질'이 여전하다. 발주기관의 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기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발주기관의 갑질이 지속되고 있지만 건설업체로서는 드러내지 못하고 속만 끓이는 게 현실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종합건설업체(125개)와 전문건설업체(15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의 64.6%가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원인으로는 공사비 산정제도의 문제와 발주자의 과도한 책임전가 등이 주로 거론됐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관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주기준으로 30%가량 된다. 이렇다보니 발주기관의 갑질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영세 중소건설업체들은 절대적으로 관급공사에 의존하고 있다. 공사비 부당삭감 등 발주기관의 갑질은 이들 업체를 시장에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중소건설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발주기관의 갑질이 줄어들지 않자 국회 차원에서 발주처의 갑질 방지법안이 줄을 잇고 있

다. 최근 국회에서 발주처의 갑질 금지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이유는 국가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 체결 강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부당행위가 발견돼도 이를 시정할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내걸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발주자가 부당특약을 제시해도 이를 심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감사원까지 나서 정부부처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문제점 등 갑질 개선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등 정부부처의 움직임은 미온적이다.

이제라도 발주기관의 갑질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후속조치로 다음 달 공공분야에 대한 갑질 종합대책이 나온다. 이번에는 진정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